

청탁금지법, 선물을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콜센터
정부민원안내



국민권익위원회

불가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있으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01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3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2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4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5만원 이하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의 선물은 나눌 수 있습니다.**

01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02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함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공직자와 직무관련이 없으면 **5만원(100만원 이하)이 넘는 선물도 나눌 수 있습니다.**



01 친구, 지인이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02 공직자가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 (예) 주민이 추석명절에 근무중인 119 구급대원에게 송편·과일 등을 선물하는 경우

※ (예) 같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장 동료들이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

제한 없음
∞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과 나누는 선물은 **금액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선물

01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02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03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선물

04 공공기관(장)이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선물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이지만 예외인정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호)

01 친족(민법 제777조)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제4호)

02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제1호)

03 동창회 등 기준에 따라 회원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제5호)

04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제3호)